

| | | | | | |
|--|-----------------|--|------------|------------|------------|
| | 변경 (20.6.19) | <경기> 과천시, 안양시, 성남시, 군포시, 의왕시, 안성시 ^{주6)} , 용인시 ^{주7)} , 수원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남양주시 ^{주8)} , 구리시, 하남시, 광주시 ^{주9)} , 고양시, 양주, 의정부시 <인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주5)} <충북> 청주시 ^{주10)} | 해당지역 없음 | 해당지역 없음 | 해당지역 없음 |
|--|-----------------|--|------------|------------|------------|

주1) 다산동·별내동

주2)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주3) 화성시 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4)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고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5) 세종특별자치시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에 한함

주6)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 제외

주7)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 제외

주8)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주9)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주10)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30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 (대표자 성명) : ①(주)세원방수(윤재원) ②에이피에스엔지니어링(주)(윤재원),
③윤재원

나. 전화번호 : ①031-594-4720 ②02-2293-7107 ③010-5790-7935

2. 명칭 : 수계 고무아스팔트 도막재와 아스팔트계 자착형 시트재를 수지 성분간 부착 유도로 재료적 일체성을 확보한 복합방수공법(Only One System : O2 System)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방수 / 복합방수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제조 및 시공과정에서의 유기용제 사용 배제로 VOCs 저감이 가능하며, 경화형 도막층 형성으로 누유 안정성이 확보된 수계 아스팔트 도막재와, 자착 특성을 갖는 시트방수재를 복합 기술로 도막방수재 및 시트방수재 제조 시 석유수지를 활용한 재료적 개량을 통해 습윤면 부착성능은 물론 복합방수층 형성 시 도막-시트에 포함된 석유수지 간 부착 유도로 이질 재료 간 일체성을 확보한 O2-System에 관한 것이다.

<범위>

누유 안정성이 확보된 경화형 수계 아스팔트 도막 방수재와 고무 아스팔트계 자착형 시트를 석유수지로 각각 개량하여 복합방수층 형성 시 도막 및 시트 내 포함된 석유수지 성분 간 일체화 부착을 유도한 O2-system에 관한 것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31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